

대구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3252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이진안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6. 2.

판 결 선 고 2021. 6. 30.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가단11194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C가 2020. 3. 11. 경북 예천군 D 답 330㎡ 중 1/2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20. 3. 12. 접수 제36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1)

N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인 2020. 3. 11.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공유지분의 가액 상당액 9,834,000원(= 공시지가 59,600원/m² × 330m² × 1/2) 외에 다른 적극재산은 없음이 인정되는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적어도 원고에 대한 채무 66,500,000원(= 8,800만 원 - 2,150만 원), E에 대한 채무 73,571,013원, 주식회사 H에 대한 대출채무 원금 10,000,000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공유지분의 가액 상당액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거래액 1억 원으로 보더라도 C의 위와 같은 채무액으로 보아 C가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C가 이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다른 일반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공동담보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인지가 문제되는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수익자의 사해의사 또는

전득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2661 판결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G은 피고를 대신하여 C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가 개입한 사정은 없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후 G으로부터 그간의 사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G이 지급해야할 양육비에 갈음하여 C로부터 차용금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관한 G의 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G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대리인인 G을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은 C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고 이를 변제 중이라는 사실을 C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점, ② G은 C와 20년 전부터 친구 사이였던 점, ③ G이 C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C가 대부업체에 지고 있는 높은 이율의 채무를 G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변제하기 위하여 있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G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준범, 판사 장래아, 판사 김지영

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소유지분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기재된 ‘경북 예천군 D 답 330㎡’는 ‘경북 예천군 D 답 330㎡ 중 1/2지분’의 오키로 보이는바, 이를 수정한다.